벌꿀 등의 식품 영양표시 규제 확대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 등을 포함한 영양표시 대상 확대를 골자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4년 8월 8일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66호)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2024년 12월 30일 총리령으로 공포하였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꿀류, 로열젤리류, 로열젤리제품, 화공가공식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과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22년 매출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영업소(제조·가공·소분·수입)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제조·가공·소분·수입)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그렇다면 영양표시제도란 무엇인가?

영양표시란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열량(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 벌꿀의 영양표시 방법은?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사분석 등 모두 가능 (영양성분의 표시 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오차는 영양성분별로 정해진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함.) 하지만, 벌꿀은 영양정보 DB(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양성분 검사 없이 영양정보 DB를 활용하여 영양성분을 표기할 수 있다.

※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1) 글씨 크기

-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
- 열량의 표시는 1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하되, 총 내용량 글씨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하고, 굵게(bold)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영양성분의 글씨크기 및 함량의 글씨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 단위로 표시하고 굵게(bold) 표시

2) 영양성분 함량 표시

- 영양성분의 표시
  - 총 내용량, 100g당 내용량 표기
- 영양성분의 표시 순서
  -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있는 순서에 따라 표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
  -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 또는 "-"로 표시
-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

※ 예외로 영양표시를 제외 할 수 있는 경우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아까시꿀 500g 영양표시 예시

[총내용량 표기]

영양정보	총 내용량 500g 1595kcal
총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mg	0%
탄수화물 432g	133%
당류 373g	373%
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g	0%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1.0g	1%
비타민B_2 2mg	144%
비타민B_6 0mg	14%
셀렌 8ug	14%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0g당 내용량 표기]

영양정보	총 내용량 500g 100g당 319kcal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mg	0%
탄수화물 86g	27%
당류 75g	75%
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g	0%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0g	0%
비타민B_2 0mg	29%
비타민B_6 0mg	3%
셀렌 2ug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표시한 영양성분 (비타민B2, 비타민B6, 셀렌)

<영양성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 영양표시 표시오류에 따른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40만원	60만원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 하거나 미달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외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